

우리나라 공공주택단지 녹지공간의 문제점 및 확보방안

김 귀 곤/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우리가 사는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얼마전까지 논과 밭이던 곳에서 어느 틈엔가 공장이 들어서 연기를 내뿜고 폐수가 흘러 나오며, 한동안 국가의 보호정책으로 제법 우거져 가던 산림은 곳곳에 들어서는 주택, 공장과 각종 위락시설의 건설로 훼손이 되었고, 특히 도시와 공단지역은 푸르름이 사라지고 공기의 오염도 점점 더해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인 주거지역은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택의 부족, 녹지공간의 부족, 인간소외 등에 의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

수목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해냄으로써 무한한 산소의 공급공장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나무의 조직

사이에 대기중의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축적함으로써 환경을 깨끗이 하는 정화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들어 나무높이 15m, 수령 15~20년생의 녹나무 한그루는 년간 탄산가스 334g, 아황산가스 약 130g, 이산화질소 약 160g을 흡수 정화하며, 1ha(3000평)의 나무숲은 년간 약 50명이 숨쉴수 있는 산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에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 옆 공간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나무들은 물을 빨아들이는 스폰지처럼 소음을 차단하고 오염물질을 흡수·정화해주는 것이다. 한편 수목의 기능 및 효과는 이러한 대기오염 정화기능 외에도 기상 및 기후의 완화, 소음방지, 방화(防火), 자연재해의 방지, 경관조성, 심리적 효과등 다양하다. 따라서 도시내 녹지공간의 보다 많은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는

도시환경의 질을 포함한 도시민의 삶의 질의 고양에 절대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규모 공공주택단지의 경우 도시내 택지의 부족, 지가의 상승, 제도적 장치의 미비, 졸속계획 등에 의하여 최소한의 법적 규제만을 만족시키는 정도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확보된 녹지의 질에 있어서도 녹지의 제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충분치 못하여, 도시환경의 질과 도시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공공주택단지내의 녹지공간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단지내 녹지공간과 관련된 법제의 검토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상 주택단지내의 녹지(공원과 녹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1

〈표 1〉 우리나라의 주택단지내 녹지공간과 관련된 법규와 내용

법		내용
토지구획정리법		사업시행지구 전면적의 3%이상을 공원에 배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3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도시계획구역내 주민 1인당 6m ² 이상 도시계획구역내 주민 1인당 3m ² 이상(시가화구역)
	별표	어린이공원 유치거리 250m이하, 면적 1,500m ² 이상 근린공원 유치거리 500m이하, 면적 10,000m ² 이상
	9조	완충녹지 :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 - 공장지역에서 특히 주거전용지역과 인접한 완충녹지 : 녹화면적율 50%이상 경관녹지 : 기능발휘를 위해 필요한 면적이내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규정	3조	공동주택 1동의 길이는 120m이하로 하여야 하며, 소음원이 되는 시설물의 경계선에서의 소음도가 75dB이상인 경우 에는 이 시설물의 경계선으로 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의 10분의 3이상을 녹지확보
	29조	단 세대당 전용면적이 85m ² 이하인 공동주택이 전체 세 대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한다.
건축법 시행령	15조	면적 165m ² 이상인 대지에 건축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기준 - 연면적 2000m ²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이상 - 연면적 1000m ² -2000m ²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이상 - 연면적 1000m ²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이상
건축조례 준칙(1991) (서울의 경우)	35조	조경면적 1m ² 당 교목 02-04본이상, 관목 04-06본이상 상록 : 낙엽=60:40 수고 2m이상을 60%이상 식재

과 같다.

분석결과 공원은 택지면적에 따라 공원의 유치거리규정에 의해 갯수가 정해지고 면적이 산정되며, 녹지는 공동주택 각각 면적의 5~15%로 규정되어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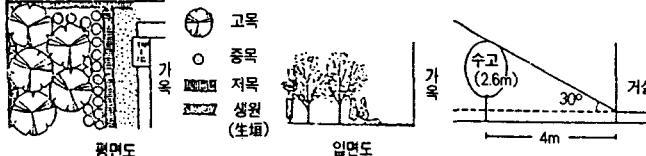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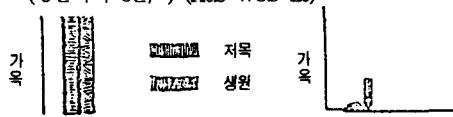
뿐 전체면적에 대한 녹지공간의 확보(완충녹지, 경관녹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 수치규정은 없으며, 그 녹지공간의 면적 또한 환경개선 효과 및 기능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공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녹지에 있어서는 주택지구 개량 법 시행규칙, 도도부현 녹화추진 사업, 시가지 녹화추진사업, 도시공원정비 등 5개년 계획, 대기 정화식재지침등에서 녹지의 위치와 시설별 녹지의 수량 및 구조, 면적에 대해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도시공원 전체의 면적기준은 같으나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약 2배정도이며, 우리나라에는 규정이 없는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녹화율을 10~30%로 제시하고 있다. 완충 녹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 수치규정이 있으나 일본의 경우 위치와 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내 녹지공간에 대한 식재구조와 수량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2참조)

우리나라의 공공주택단지내 녹지공간의 실태분석

앞에서 살펴본 법제도하에서 우리나라 공공주택단지의 녹지 공간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토지개발공사에서 1976년부터 1989년까지 시행한 주거단지 개발 총 78개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녹지공간을 공원과 녹지로 나누어 면적과 배치형태, 녹지의 질을 분석하였다.

〈표 2〉 일본의 주택단지내 녹지공간과 관련된 법규와 내용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내용
도시공원법 시행령		<p>도시공원의 면적기준 :</p> <p>도시계획구역내 주민 1인당 6m²이상 도시계획구역내 주민 1인당 3m²이상(시가화구역) 어린이공원 유치거리 250m, 면적 2500m²이상 근린공원 유치거리 500m, 면적 20,000m²이상</p>
주택지구 개량 법 시행규칙	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지구내에 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면적의 합계가 개량지구 면적의 3%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도도부현의 녹화추진사업 (주로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주택의 녹화율 : 녹화여유지×50/100 (1-건폐율)×50/100 - 공동주택, 주택단지의 녹화율 : 10~30% - 주택(주로 시가지)의 녹화율 : 10~20%
시가지 녹화추진사업(주로 시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단지의 녹화율 : 20% - 주택의 녹화율 : 10%
도시공원 정비 등 5개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충녹지의 적정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 공업지와 일반시가지 사이로서 50~200m • 제3종 : 교통기관이 주거지역 통과할 때는 10~20m
대기정화 식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옥의 남쪽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경의 동지의 경우 태양의 남중고도가 30도 56분이므로 가옥의 남쪽 부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식재한다. 100m²당 고목5본, 중목 44본, 저목 40본 (H5 W3 L05) (H2 W1 L05) (H05 W05 L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옥의 동.북.서쪽의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가능공간의 폭이 2m이상인 경우 40m²당 고목 25본, 중목 30본, 저목 40본 (H5 W35 L05) (생울타리 3본/m) (H05 W05 L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가능공간의 폭이 1m이상 2m미만인 경우 10m²당 중목 30본, 저목 20본 (생울타리 3본/m) (H05 W05 L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가능공간의 폭이 1m이상인 경우 5m²당 중목 30본 (생울타리 3본/m) 가옥 

H : 장래에 예상되는 수고 W : 장래에 예상되는 수관폭 L : 수간간극

〈표 3〉 공공주택단지 개발사업의 공원면적 분석결과(1976~1989년)

지역별	면적 (m ²)	계획인구 (인)	인구밀도 (인/ha)	공원면적 (m ²)	면적율 (%)	1인당 공원면적
서울(2)	4842004	129000	277.17	527167	10.08	3.83
직할시(26)	10531796	222896	233.93	411333	3.93	1.82
경기(12)	7762889	120404	169.48	608040	7.44	7.12
강원(9)	981554	17770	185.53	49679	4.01	2.44
충북(7)	3141068	56630	199.05	135958	4.40	2.57
충남(1)	388714	8285	213.14	7800	2.01	0.94
경북(5)	1136638	17100	155.48	44089	5.42	5.30
경남(7)	3614481	67800	184.74	114258	4.14	2.19
전북(6)	2817231	49500	170.08	113610	8.38	2.68
전남(3)	1435658	27380	190.03	34413	3.26	1.90
전국(78)	36652202	716665	197.86	2046347	5.31	3.08

〈표 4〉 공공주택단지 개발사업의 밀도별 공원면적 분석결과

인구밀도 구 분	계획면적 (m ²)	계획인구 (인)	평 균 인구밀도 (인/ha)	공원면적 m ²	공원면적률 (%)	1인당 공원면적 (m ² /인)
저밀도(46)	21677542	337154	155.57	1065651	4.91	4.80
중밀도(30)	14,726,937	367511	249.62	973350	5.49	1.88
고밀도(2)	2447723	12000	481.25	7346	3.07	0.68

〈표 5〉 공공주택단지 개발사업의 녹지면적 분석결과

지역별	녹지면적 (m ²)	녹지 면적율 (%)	1인당 녹지면적 (m ²)	공원녹지 (m ²)	공원녹지 면적율 (%)	1인당 공원녹지 면적(m ²)
서울(2)	59078	1,321.99	0.46899	586245	11.3988	429.89
직할시(26)	56604	1,789.29	0.68977	467937	4.54909	20.6987
경기(12)	57835.9	1,534.33	0.91252	665876	8.33975	76.4756
강원(9)	1091	0.58773	0.041988	50769.9	4.13686	2.53409
충북(7)	123804	0.93394	0.05841	148338	4.66265	2.73647
충남(1)				7800	2.01	0.94
경북(5)	12459	2,443.98	1.7015	56548	6.39333	5.96214
경남(7)	38435	3,758.62	3.54868	152693	5.21065	3.26213
전북(6)	28611	4.718	1.17323	142221	10.7399	3.26213
전남(3)	8078	0.09381	0.04298	35220.8	3.32272	1.93016
전국(78)	267302	1,718.17	0.95416	2313649	6.07604	3.4589

녹지공간의 면적

먼저 공원의 면적을 도별로 적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전국의 계획평균 인구밀도는 197.86인/ha로서 저밀도에 해당하고 있다.

각도별로 분석하면 공원면적율에 있어서는 서울이 가장 높고, 1개 case에 불과하지만 충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1인당공원면적 역시 서울이 가장 높고, 충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공원면적율은 5.31%, 1인당공원면적은 3.08 m²/인으로서 토지구획정리법상 기준 3%와 도시공원법상 기준(시가화구역 3m²/인)을 겨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지의 밀도분류에 따라 주택단지를 저밀도(100~200인/ha), 중밀도(200~400인/ha), 고밀도(400인/ha 이상)로 나누어 공원면적을 분석하면 표4와 같다.

밀도가 높을수록 공원면적율과 1인당공원면적이 늘어나야 함에도 반대로 줄어들고 있으며, 중밀도, 고밀도에서는 1인당공원면적이 도시공원법 기준에 상당히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녹지를 도별로 전국을 분석하기 위하여 78개 사업 지역의 녹지로 분류된 지역의 면적을 분석한 결과는 표5와 같다.

분석결과 전국 78개지역의 평균녹지면적율은 1.7%, 1인당녹지면적은 $0.95m^2$ /인으로 나타났으며, 공원과 녹지를 합친 공원녹지 면적율은 평균 6.07%, 1인당공원녹지 면적은 $3.45m^2$ /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과의 비교를 위해 일본의 공공주택단지 개발사업 9개지역을 대상으로 공원녹지량을 분석한 결과 일본의 9개 신시가지(다마B-3, B-4, 팔왕자, 성전, 반능, 북섭, 유목, 화천, 후목)의 평균 공원녹지면적율은 21.1%, 1인당 공원녹지면적은 $18.8m^2$ /인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일본이 면적율에서는 3.5배, 1인당 면적에서는 5배정도로 나타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표6 참조)

녹지공간의 배치

공원은 종류와 그 이용목적에 따라서 그 시설규모와 기준이 다르다. 같은 종류의 공원이라도 그 이용거리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그 규모를 다르게 계획한다. 또한 같은 종류의 공원을 중복 배치되지 않도록 이용거리를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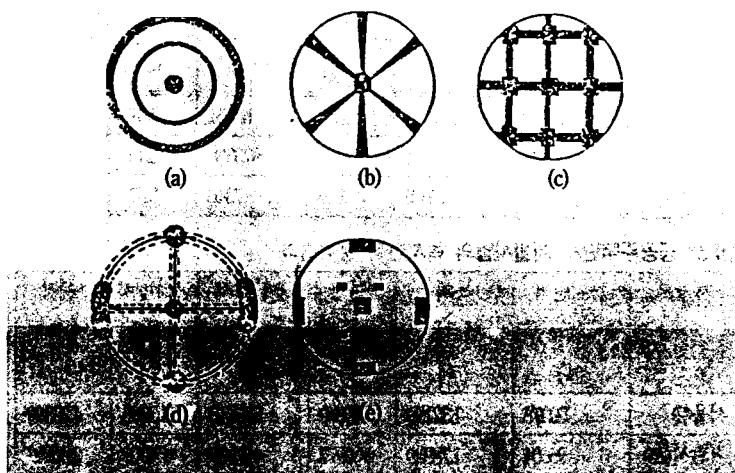
안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도시전체의 총량적 공원면적이나 인구당면적은 계획지표로서 중요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에 이용가능한 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공원배치계획에 있어서는 공원과 녹지계통을 일체로하는 단위로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치형식에 있어서는 모형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a) 환상형(Circular pattern), (b) 방사상형(radial pat-

tern), (c) 바둑판형(격자형 : grid pattern), (d) 회랑형(corridor pattern), (e) 분산형(산재형 : diversion pattern)등이 있다.

공원개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전도시의 공원녹지를 함께 묶어 조직적으로 계통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광로, 공원도로, 녹지대에 의해 산책, 자전거타기, 드라이브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공원계통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원녹지의 배치형식은 그림1과 같다.



〈그림 1〉 공원녹지의 배치형식

〈표 6〉 일본의 공공주택단지 개발사업 공원녹지 분석결과

개발사업명	다마B3	다마B4	팔왕자	성전	반능	북섭	유목	화천	후목	평균
공원녹지 면적율	11.5%	18.9%	24%	20.6%	29.5%	21.2%	11.8%	10.8%	42.3%	21.1%
1인당공원 녹지면적	13.8	15.9	33.6	16.7	38.6	19.4	13.9	12.4	14.5	18.8

토지개발공사의 주거단지개발 사업 78개소를 상기 공원녹지 배치형식에 따라 유형화해본 결

과 산재형(65개지역)과 격자형(13개지역)으로 나누어 볼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외국의 공공주택단지의 경우 공원녹지배치 유형과 비교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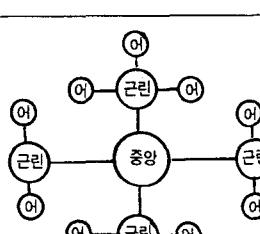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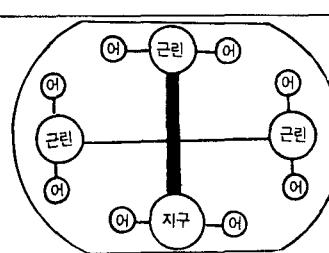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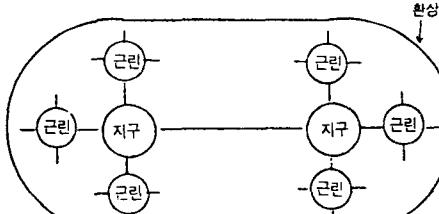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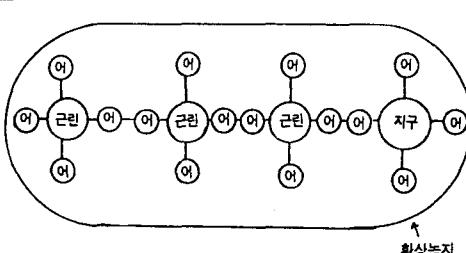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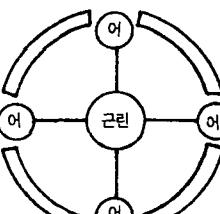
〈그림 2〉 우리나라 공공주택단지의 공원녹지배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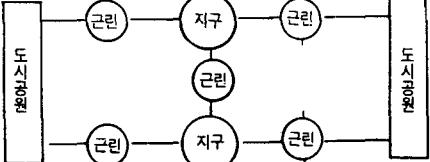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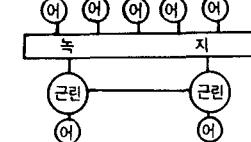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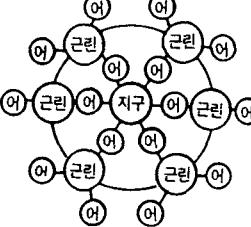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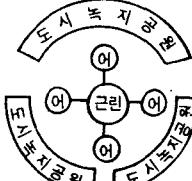
배치유형	특 성	해당 도시명(신시가지)	배 치 현 황
산재형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공원 유치거리 250m, 근린공원 유치거리 500m를 기준배치 -근린주구 개념에 의거 1주구당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4개소 배치 -각 공원간 연결녹지 (녹도) 미비 -시설기준에만 만족시키는 공원배치 	서울개포, 부산만덕 1지구 등 총 65개 신시가지	<p>사례 부산 만덕 1지구</p> <p>1. 현황</p> <p>2. 도식화</p>
단 순 격자형 (B)	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계에 녹지를 일렬로 배치후, (녹지축 형성)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유치 거리 기준으로 배치 -여전히, 각 공원간 연결녹지는 미비 	이리영등, 정촌홍덕, 안양석수, 대구안심, 대구칠곡, 송탄 서정, 대구장기, 경주 도동(총8개)	<p>사례 경주 도동지구</p> <p>1. 현황</p> <p>2. 도식화</p>

배치유형		특 성	해당 도시명(신시가지)	배 치 현 황	
단 순 격자형 (B)	B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 중심에 녹지축을 형성후 양쪽으로 어린이공원, 균린공원을 유치거리 기준으로 배치 -중심 녹지축과 공원 간의 연결녹지는 미비 	창원명곡, 서울고덕 지구(총 2개소)	<p>사례 창원명곡 지구</p> <p>1. 현황</p>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상업용지 ■ 공원 ■ 녹지 □ 학교 ▣ 업무시설 □ 운동장 ▨ 종교부지 □ 하천 <p>R=250m</p>	
	B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유치거리별로 배치 -각 공원간 녹도로 연결 -공원녹지 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단지 외곽 완충녹지 미비 	서울등촌, 쟁주금룡, 수원구운지구(총 3 개소)	<p>사례 서울등촌지구</p> <p>1. 현황</p> <p>R=250m</p> <p>R=500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린공원 ■ 어린이공원 ■ 완충녹지 ■ 녹도 <p>2. 도식화</p>	

〈그림 3〉 일본 공공주택단지의 공원녹지배치 유형화

법례
 도 도시공원 지 지구공원 어 어린이공원
 중 중앙공원 근 근린공원 — 녹도 ■ 녹지

배치 유형	도시명	공원수	배치 현황	1인당 공원녹지면적	공원녹지면적율
격자형(A)	단순격자형(A ₁)	다마B-3 중앙:1 근린:4 어린이:9		13.8m ² /인	11.5%
	단순격자 + 환상녹지(A ₂)	다마B-4 지구:1 근린:3 어린이:8		15.9m ² /인	18.9%
	성전	지구:2 근린:6 어린이:		16.7m ² /인	20.6%
	팔왕자	지구:1 근린:3 어린이:16		33.6m ² /인	24%
	반동	근린:1 어린이:4		38.1m ² /인	29.5%

배치 유형	도시 명	공원 수	배치 현황	1인당 공원녹지면적	공원녹지면적율
단순격자 + 두개의 공원축 (A ₃)	北攝 북섭	도시 : 2 지구 : 2 근린 : 5 어린이 : 1		19.4m ² /인	21.2%
단순격자 + 녹지축 (A ₄)	仰木 유목	근린 : 2 어린이 : 7		13.9m ² /인	11.8%
방사환상형 (B)	和泉 화천	지구 : 1 근린 : 6 어린이 : 16		12.4m ² /인	10.8%
격자형 + 환상형 (C)	厚木 후목	도시녹지공원 : 3 근린 : 1 어린이 : 4		14.5m ² /인	42.3%

기 위하여 일본의 9개 공공주택 단지의 공원녹지배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격자형과 방사환상형, 격자형+환상형의 3개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와의 차이로는 산재형보다는 보다 체계적인 격자형과 방사환상형 등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3과 같다.

녹지공간의 질

공공주택단지에 있어서 녹지 공간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 78개

공공주택단지 개발사업을 기준 녹지의 이용유무로 분석한 결과 아래 표7과 같다.

〈표7〉 공공주택단지 개발사업의 기준녹지 이용유무 분석

구 분	대상 개발사업
기준녹지이용	서울고덕지구 등 30개지역(64%)
기준녹지불 이용	김해 삼방지역 등 21개지역(36%)
현황에 녹지 없음	대구 불로지역 등 9개지역
분석불가	부산 안락지역 등 10개지역

분석결과 분석가능지역 중 64%가 기준녹지를 이용한 것으로, 나머지 36%가 기준녹지를 이용하지 않고 제거후 공원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단지의 녹지공간에 확보에 있어서 개발전의 양호한 산림이 보존되고, 덧붙혀 공원을 설치하면 이상적이나, 토지구획 정리시 개발전의 녹지가 전부 제거되고, 다시 택지개발에 의해 공원이 설치되고 공원내 녹지공간에 대한 위락적 이용중심의 시장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생

태적 측면과 녹지에 의한 환경의 질 개선 측면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전의 기존산림의 보존녹지나 공원으로 지정하여 양호한 녹지상태를 보호하고, 새로운 공원이나 녹지의 설치시 위락적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에 덧붙혀 녹지에 의한 환경의 질 개선측면을 통합한 환경보전립의 개념을 도입해야 녹지공간의 질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제 1부

1. 우리나라 공공주택단지의 녹지공간 분석결과 법규정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치화된 면적만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선진외국의 법제를 참조하고 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원과 녹지면적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면적에 대한

보호한 규정을 보완, 위치, 면적 및 구조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제시하고 다른 공동주택단지 설계기준과 똑같은 중요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아울러 녹지공간의 면적 총량에 대한 규정을 전체 단지면적의 몇%(면적율)와 1인당 녹지면적(인구율)으로 나누어 개발밀도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녹지총량은 시각적인 측면과 함께 환경보전적인 측면에서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수경뿐만아니라 환경권 의미의 자연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3. 공원녹지의 배치에 있어서도 공원과 녹지개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도록 모든 도시의 공원녹지와 함께 묶어 조직적으로 계통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를위해 공동주택단지 BLOCK녹지제(생태적 최소역을 고려한 군락식재)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서 다양한 도시이미지 및 기능을 가지는 도시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녹지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전의 기존산림을 보존녹지나 공원으로 지정하여 양호한 녹지상태를 최대한 보호하고, 새로운 공원이나 녹지의 설치시 위락적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녹지의 환경의 질 개선측면을 통합한 환경보전립의 개념을 도입해야 녹지공간의 질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5. 생태적 공동주택단지 설계 기법을 도입하여 인간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적 요소를 도입한 공동주택단지공간을 창출하고, 녹지공간을 생태적으로 연출해야 할 것이다.

6. 위와 같은 조치를 고려한 조경수의 생산, 공급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조경수목가격 정정공고

참느릅나무의 수종변경에 따른 가격산정시 단순사무착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 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정전			정정후				
수종명	규격		단가	수종명	규격		단가
	H	R			H	R	
참느릅나무	2.5	4	13,700원	참느릅나무	2.5	4	24,000원
	3.0	6	21,500원		3.0	6	33,200원
	3.5	8	38,800원		3.5	8	68,700원
	4.0	10	71,600원		4.0	10	126,000원